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26. . .

제 출 자: 원 주 시 장

1. 제안이유

첨단산업의 중요성 확대에 따라 미래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첨단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첨단산업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함(안 제2조)

나. 첨단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목표 및 기본방향부터 인재혁신을 위한 실행계획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함(안 제4조)

다. 용어를 확대변경하여 첨단산업의 협력체계 확대의 기반을 마련함(안 제7조)

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안 제8조)

마. 위원회 구성을 효과적으로 개편함(안 제9조)

-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

- 3개의 분과위원회에서 필요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

로 변경

-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바.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붙임]

나. 관계법령 발췌서[붙임]

다. 입법예고(2026. 9. 4. ~ 9. 28.), 의견제출 없음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첨단산업”이란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2.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2항제2호가목의 첨단분야 중 같은 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첨단분야
3.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산업
4. 그 밖에 시장이 기술 집약도가 높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4조제2항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첨단산업의 육성에 관한 목표 및 기본 방향
2. 첨단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발전 전망
3. 국가정책과 연계한 첨단산업의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첨단산업 특화단지 등 인프라 구축 현황 및 실행계획
5. 산·학·연·병·관 등 첨단산업 협력체계 구축 현황 및 실행계획
6. 첨단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사업전환 등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첨단산업 인재 혁신을 위한 실행계획
8. 그 밖에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 제목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산·학·연·병·관 등 협력체계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학연”을 “산·학·연·병·관 등의”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첨단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를 “(첨단산업 전략추진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을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원주시 첨단산업 전략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의결한다.
 1. 첨단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정책과 연계한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첨단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산·학·연·병·관 등 첨단산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첨단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2항 중 “부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 산하에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필요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제6항제1호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고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분과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한다.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원주시 첨단산업육성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주시 첨단산업 전략추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원주시 첨단산업육성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원주시 첨단산업 전략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이미 심의·의결한 사항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분과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첨단산업”이란 기술 집약도가 높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첨단소재 산업 2. 정보통신융합 산업 3. 의료기기융합, 바이오융합 산업 4.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산업 5. 그 밖에 첨단기술과 지식이 집약된 산업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첨단산업”이란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2.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2항제2호가목의 첨단분야 중 같은 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첨단분야 3.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산업 4. 그 밖에 시장이 기술 집약도

제4조(첨단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첨단산업 현황 및 성장전망
2. 첨단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
시책

2의2. 첨단산업 인재양성 관련
사업시책

3. 주요 추진산업 및 산학연 협
력체계 구축

4. 첨단산업에 대한 자금·기술
·입지·인력·사업전환 등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첨단산업 육성 및 지
원에 필요한 사항

③·④ (생략)

가 높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4조(첨단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첨단산업의 육성에 관한 목
표 및 기본 방향

2. 첨단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발전 전망

3. 국가정책과 연계한 첨단산업
의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
획

4. 첨단산업 특화단지 등 인프라
구축 현황 및 실행계획

5. 산·학·연·병·관 등 첨단
산업 협력체계 구축 현황 및
실행계획

6. 첨단산업에 대한 자금·기술
·입지·인력·사업전환 등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첨단산업 인재 혁신을 위한
실행계획

8. 그 밖에 첨단산업 육성 및 지
원에 필요한 사항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생략)

제8조(첨단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첨단산업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점검하기 위하여 원주시 첨단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첨단산업 정책과제 및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첨단산업 육성 및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학·연·병·관 등 협력체계 구축) ① -----

--- 산·학·연·병·관 등의 -----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첨단산업 전략추진위원회

의 설치) ① 시장은 첨단산업육성에 관한 정책을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원주시 첨단산업 전략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의결한다.

1. 첨단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정책과 연계한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첨단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산·학·연·병·관 등 첨단산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u>부시장</u>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 략) ④ <u>위원회 산하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 위원회명은 위원회 구성시 결정하고 분과별 인원은 7명 이내로 한다.</u> ⑤ <u>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u>3명</u> 2. 3. (생 략) ⑦ (생 략)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②	5. <u>그 밖에 첨단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시장</u>----- ----- -----. ③ (현행과 같음) ④ <u>위원회 산하에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필요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u> ⑤ <u>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⑥ ----- ----- -----. 1. ----- <u>2명</u> 2. 3.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②
---	---

(생략)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첨단산업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분과별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⑦ 분과위원회 운영사항은 위원회 운영을 준용한다.

(현행과 같음)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고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삭제>

⑦ 특별위원회 -----
-----.

관계법령 발췌서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이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①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관련 특례에 관한 사항
6.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관련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전략산업 관련 기업, 기관 또는 단체 간 연대협력모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에 관한 사항
9. 전략기술 관련 전문인력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738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산업”이란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2항제2호가목의 첨단분야 중 같은 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첨단분야

다.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산업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20조(수당 등)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 2026년 당초예산 : 3,15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원주시 경제국 첨단산업과장 배현만
연락처	(033) 737 - 3010

원주시 청소년 꿈이름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6. . .

제 출 자 : 원 주 시 장

1. 제안이유

기존 바우처 사업은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예체능 분야에 한정하여 지원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더 다양한 활동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이 단절되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현실적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18세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지급 수단을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청소년의 성장 단계에 맞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범위 확대 및 지원체계 정비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원주형 성장바우처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목적 규정을 정비함(제명 및 안 제1조)

나. 정의규정에서 ‘청소년’으로 인정하는 기준과 바우처의 성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다. 지원대상을 7세~12세에서 7세~18세로 확대하고, 연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라. 바우처 신청 자격 및 결정 절차를 정비함(안 제4조)

마. 지원기간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바. 사용자 준수사항,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7조)

사. 사용처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아. 전산시스템 구축, 성과 모니터링 및 운영세칙 등 행정사항을 정함(안 제9조~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

나. 비용추계서[붙임]

다. 입법예고(2026. 8. 28. ~ 2026. 9. 17.), 의견제출 없음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형 성장바우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청소년에게 성장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기본적 권리 및 복지증진과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원주형 성장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란 청소년의 교육 및 자기계발 등 지원을 위하여 원주시가 지급하는 원주사랑상품권 등의 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7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연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령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바우처 지원대상 연령은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본인
2. 지원대상자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
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 지원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5조(지원기간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바우처의 지원이 결정된 청소년에게 바우처 지원 결정이 된 달의 다음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매월 지원한다.

② 바우처는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원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바우처를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제8조에 따른 사용처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바우처를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바우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원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이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바우처 지급일 현재 국외 체류 중이고, 출국일부터 계산한 국외 연속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바우처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바우처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다만, 바우처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환수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지급 중지 사유 발생 후 과오지급된 경우

4. 제6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바우처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제8조(사용처 및 사용제한) ① 바우처는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개별사업자에 대하여 바우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바우처 사용을 제한하는 업종 또는 개별사업자에 대하여는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산시스템 구축 등) ① 시장은 바우처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바우처의 지급·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성과 모니터링) ① 시장은 바우처 사업의 효과성 및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가맹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 모니터링 업무를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성과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우처의 신청 및 지급 절차, 제한업종, 지원 중지 및 환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바우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에 따라 바우처 지원이 결정되어 지원 중인 청소년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은 2027년 1월 1일에 이 조례에 따른 바우처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보며, 2027년 1월분부터 이 조례에 따른 바우처를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바우처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중지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종전 지급분 및 잔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급된 바우처의 사용, 사용기한 및 사용기한 만료 후 잔액의 처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바우처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종전의 조례에 따른 신청은 이 조례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처분 및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결정, 지원중지, 가맹점 지정 및 그 밖의 처분·절차와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종전의 위반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바우처 지원의 중지, 환수 및 그 밖의 조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바우처 지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원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보의 연계, 업무협약의 체결 및 그 밖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별표]

연령별 지급기준(제3조 관련)

연령대	7세 ~12세	13세 ~15세	16세 ~18세
지급액	월 5만 원	월 6만 원	월 7만 원

주)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해당 연령이 된 것으로 본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발생요인: 7세~18세 대상 매월 연령에 따른 바우처 지급

연도	초등학생(7~12세)	중학생(13~15세)	고등학생(16~18세)
금액	월 5만 원	월 6만 원	월 7만 원

나. 관련조문: 「원주형 성장바우처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7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연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관내 7세~18세 인구 현황(2026. 5. 31. 기준)

(단위: 명)

연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인원	38,149	36,931	35,707	34,161	32,563
초	17,200	16,216	15,160	14,308	13,541
중	10,322	9,981	9,697	9,531	9,041
고	10,627	10,734	10,850	10,322	9,981

나. 추계 결과

(단위: 백만 원)

연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예산	26,679	25,932	25,192	24,118	23,018

다. 재원조달 방안: 자체수입(시비)

3. 작성자

작성자	원주시 문화교육국 교육청소년과장 박 성 명
연락처	033-737-2651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백만 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세 입		0	0	0	0	0	0
		0	0	0	0	0	0
세 출		26,679	25,932	25,192	24,118	23,018	124,939
바우처 지원금		26,679	25,932	25,192	24,118	23,018	124,939
재원 조달		26,679	25,932	25,192	24,118	23,018	124,939
의 존 재 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 체 수 입	소 계	26,679	25,932	25,192	24,118	23,018	124,939
	지방세	26,679	25,932	25,192	24,118	23,018	124,939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원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26. . .

제 출 자: 원 주 시 장

1. 제안이유

원주시의 고유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우수한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지원하고, 공모전 개최·관로 개척 등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원주시 관광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광기념품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 ~ 제4조)
- 나. 관광기념품 관련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 라. 관광기념품 지정 및 제작·판매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3조)
- 마.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불임]
- 다. 입법예고(2026. 8. 28. ~ 9. 17.), 의견제출 없음

원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홍보 및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홍보할 목적으로 원주시의 관광자원·상징성 등을 반영하여 개발된 물품 중 제9조에 따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시책과 사업)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안 수립
2.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 및 자체 개발
3. 관광기념품 지정 및 판매점 지정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관광기념품 전시·홍보 등 지원

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원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다.

1. 제4조의 시책 및 사업수행
2. 제10조의 관광기념품 지정
3. 제11조의 관광기념품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모전 등의 개최)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시장은 공모전 등을 개최하거나, 제7조에 따른 포상·지원을 하려는 경우 시보 또는 원주시청 누리집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공모전 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입상자에 대한 포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모전

등의 입상자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상작의 전시 및 홍보 지원(전시·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전시회 참가 등)
2.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디자인·브랜딩 개선, 시제품 제작, 컨설팅, 패키징 개발 등)
3.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8조(입상작에 대한 구매) 시장은 시정행사 활용 및 관광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공모전 등의 입상작 또는 이를 활용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관광기념품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의 공모전 등에서 입상한 작품
2. 원주시에 소재한 법인·단체 또는 사업자가 개발한 작품
3. 시에서 자체 개발한 작품

② 시장은 관광기념품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점검을 위

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후관리에 대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관광기념품 지정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제 전에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관광기념품 지정을 받은 자와 원주시가 협약(계약)으로 정한 관광기념품 판매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른 개선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5. 그 밖에 해당 관광기념품 지정을 받은 자와 원주시가 체결한 협약(계약)을 위반하여 관광기념품 지정을 계속 유지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① 제9조에 따라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받은 자는 자체적으로 관광기념품을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고, 시장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전시판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홍보책자에 관광기념품 정보 게시 및 박람회 등에서

의 전시·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구매한 관광기념품을 제12조에 따른 전시 판매점에서 판매하거나 전시·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전시판매점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을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점(이하 “전시판매점”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시판매점의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판로개척 등 지원)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의 공동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 활동
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3.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및 특별행사 개최 및 참가
4. 각종 전시·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유통·사업육성 등 관광기념품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

2. 관광기념품 개발·판매·유통 활성화 사업

3. 제12조에 따른 전시판매점 등 운영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의 범위, 절차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4의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2024. 11. 1. 제정]

제13조(우수 관광기념품의 선정)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의 지정)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제작·개발·판매하는 업체 중 제작 및 개발 기술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2026. 4. 10. 제정]

제12조(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① 제9조에 따라 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군수가 설치하거나 지정된 판매점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홍보책자에 관광기념품 정보 게시 및 박람회 등에서의 전시·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광기념품 전시판매점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을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점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원주시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기념품의 판매를 위한 상품의 제작 및 구입, 판매점 설치 및 운영 등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재정 소요가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재정 소요액은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작성 예외대상임

4. 작성자

작성자	원주시 문화교육국 관광과장 원 민 철
연락처	(033) 737 -5100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6. . .

제 출 자: 원주시장

1. 제안이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의 불일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대상과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의2에서 정한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일관되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공원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정비함(안 제2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신·구조문대비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라. 입법예고(2026. 9. 4. ~ 9. 28.), 의견제출 없음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이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그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경**”을 “**감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소유차량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5.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어르신

·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6.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차량으로 그 구성원이 탑승한 때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차량
8.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9.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차량
10.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기증자와 기증등록자의 소유차량에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
11.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제6조의2에 따른 헌혈자가 탑승한 차량으로, 헌혈증 또는 입증자료를 제시한 때. 다만, 헌혈증 또는 입증자료의 유효기간은 헌혈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급받아 유

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또는 차량용 천사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주차요금 감면)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의2(주차요금 감면) ①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u>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자 증명서를 붙인 자동차. 다만, 성실납세자 증명서 발급일부터 1년에 한하여 면제한다.</u>	8. <u>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이나 강원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발급 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 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그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u>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50퍼센트를 <u>감경</u> 할 수 있다.	② ----- ----- ----- <u>감면</u>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 <u>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가운전차량</u>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u>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 에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본 인이 탑승한 차량</u>
3. <u>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급</u>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
지한 자가운전차량

4. 차량용 천사증(스티커를 포
합한다)을 소지한 자가운전차
량. 다만, 천사증의 유효기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
승한 차량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소유차량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5.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
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에 따른 어르신·임산
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으로 어르신·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6.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
가의 차량으로 그 구성원이 탑
승한 때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
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
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차량

<u><신 설></u>	8. 「<u>대기환경보전법</u>」 제58조 제11항에 따른 <u>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u>
<u><신 설></u>	9. 「<u>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7조제1항에 따른 <u>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차량</u>
<u><신 설></u>	10. 「<u>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u>」에 따라 <u>장기등기증자와 기증등록자의 소유차량에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u>
<u><신 설></u> ③ (생 략)	11. 「<u>원주시 헌혈 권장조례</u>」 제6조의2에 따른 <u>헌혈자가 탑승한 차량으로, 헌혈증 또는 입증자료를 제시한 때. 다만, 헌혈증 또는 입증자료의 유효기간은 헌혈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u> ③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주차관제장비 임대 및 통합센터 운영 용역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

- 주차관제장비 임대 및 통합센터 운영 용역비 연평균 1억 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원주시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장 이 창 길
연락처	(033) 737-3620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6. 9. 30.

제 출 자: 원 주 시 장

1. 제안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의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를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나. 신·구조문대비표[붙임]

다. 입법예고(2026. 8. 28. ~ 9. 17.), 의견제출 없음

원주시 조례 제 호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의 범위(제2조 관련)

사업비	수수료의 범위
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0억원 초과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립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의 범위는 현지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u>수수료의 범위</u>(제2조 관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사업비</th><th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의 범위</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억원 이하</td><td>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td><td>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td><td>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td><td>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td><td>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td><td>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td><td>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td><td>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00억원 초과</td><td>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td></tr> </tbody> </table> 비고: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업비	수수료의 범위	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	700억원 초과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	[별표] <u>수수료의 범위</u>(제2조 관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사업비</th><th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의 범위</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억원 이하</td><td>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td><td>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td><td>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td><td>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td><td>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td><td>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td><td>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td><td>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00억원 초과</td><td>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td></tr> </tbody> </table> 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의 범위는 현지역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사업비	수수료의 범위	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0억원 초과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사업비	수수료의 범위																																												
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																																												
700억원 초과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																																												
사업비	수수료의 범위																																												
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0억원 초과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관계법령 발췌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수수료의 범위(제25조의6 관련)

사업비	수수료의 범위
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0억원 초과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의 범위는 현지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6. . .

제 출 자 : 원 주 시 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도시재생법)에 부합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지속성과 자
생력을 확보하고, 주민주도형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시설의 관리위탁
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비

2. 주요내용

- 수탁자 선정 방식과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조직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신·구조문대비표[붙임]

다. 입법예고(2026. 8. 21. ~ 2026. 9. 10.), 의견제출 없음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를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마을기업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다른 법인·단체 등에 우선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등에게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관리위탁) 시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를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를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마을기업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다른 법인·단체 등에 우선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등에게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위탁료를 산출

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도시재생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법인·단체 등으로서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다른 법인·단체 등에 우선하여 제3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등에게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료,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위·수탁자관리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해야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2.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시설물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시재생 시설물 위탁 운영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간은 최초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 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⑦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6. 10. .

제 출 자: 원주시장

1. 제안이유

- 가.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시민주권시대’ 가치 실현 및 주요 시정 현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 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및 AI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한 기구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조정

- (신설) 전략산업국
- (명칭변경) 문화교육국 → 문화체육관광국 / 환경국 → 기후환경녹지국
도시국 → 건설도시국 / 재정국 → 기획재정국

나. 과 조정

- (신설) 시민주권담당관, AI혁신과, 혁신도시과, 문화유산과,
시립미술관건립추진단, 통합돌봄과
- (통합) 기획과 + 예산과 → 기획예산과
- (명칭변경) 시정홍보실 → 시정소통실 / 에너지과 → 에너지전환과
여성가족과 → 성평등가족과 / 기후대응과 → 기후정책과
환경과 → 환경정책과

다. 국 소속부서 조정

- 경제국: 경제진흥과, 기업지원일자리과, 도시재생과, 에너지전환과
- 전략산업국: 첨단산업과, AI혁신과, 투자유치과, 지역개발과, 혁신도시과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체육과, 관광과, 시립미술관건립추진단
- 복지국: 복지정책과, 보육아동과, 생활보장과, 경로복지과, 통합돌봄과, 장애인복지과, 성평등가족과
- 기후환경녹지국: 기후정책과, 환경정책과, 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산림과
-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계획과, 허가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관리과
- 행정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청소년과, 재산관리과, 정보통신과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세무과, 지방세입과, 징수과, 회계과

라. 직속기관 조정

- (신설) 동물보호과
- (명칭변경) 로컬푸드과 → 농산물유통과
- (직제순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동물보호과,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마. 사업소 조정

- (명칭변경) 평생교육원 → 도서관문화진흥원
- (신설) 원주시서울사무소
- (직제순서) 도서관문화진흥원: 시립중앙도서관, 미리내도서관, 학습관

바.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정정 기재(안 별표 7)

- 사제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사제4리 추가

사.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변경 및 추가(안 별표 9)

- (변경) 평생교육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일로 139(일산동)
→ 도서관문화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472-12(단구동)
- (신설) 원주시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5(서교동)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붙임]

나. 관계법령 발췌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붙임]

라. 입법예고(2026. 8. 28. ~ 9. 28.), 의견제출이 있었으나 미반영함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검토 보고[붙임]
- (주요내용) 농업인안전과 신설 및 동물보호과의 복지국 또는 환경국 배치 검토를 요청 → 농업인안전과 신설은 검토를 고려하겠으나 동물보호 사무는 축산과(동물복지팀)에서 수행 중이므로 의견 미반영.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제국·안전교통국·문화교육국·복지국·환경국·도시국·행정국·재정국”을 “경제국·전략산업국·안전교통국·문화체육관광국·복지국·기후환경녹지국·건설도시국·행정국·기획재정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정홍보실”을 “시민주권담당관과 시정소통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제진흥과·기업지원일자리과·투자유치과·첨단산업과·지역개발과”를 “경제진흥과·기업지원일자리과·도시재생과·에너지전환과”로 한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5조의2) 제2항 중 “별표 1의2와”를 “별표 1의3과”로 하며,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략산업국에 두는 과) ① 전략산업국에 첨단산업과·AI혁신과·투자유치과·지역개발과·혁신도시과를 둔다.

② 전략산업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6조의 제목 “(문화교육국에 두는 과)”를 “(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과·교육청소년과·관광과·체육과를”을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

· 체육과 · 관광과 · 시립미술관건립추진단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교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복지정책과 · 보육아동과 · 생활보장과 · 경로복지과 · 장애인복지과 · 여성가족과”를 “복지정책과 · 보육아동과 · 생활보장과 · 경로복지과 · 통합돌봄과 · 장애인복지과 · 성평등가족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환경국에 두는 과)”를 “(기후환경녹지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국에 환경과 · 기후대응과 · 에너지과 · 생태하천과 · 자원순환과 · 공원녹지과 · 산림과”를 “기후환경녹지국에 기후정책과 · 환경정책과 · 생태하천과 · 자원순환과 · 공원녹지과 · 산림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기후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도시국에 두는 과)”를 “(건설도시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국에 건설과 · 도시계획과 · 도시재생과 · 허가과 · 건축과 · 주택과 · 토지관리과”를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 도시계획과 · 허가과 · 건축과 · 주택과 · 토지관리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총무과 · 기획과 · 자치행정과 · 회계과 · 정보통신과”를 “총무과 · 자치행정과 · 교육청소년과 · 재산관리과 · 정보통신과”로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재정국에 두는 과)”를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정국에 예산과 · 세무과 · 지방세입과 · 징수

과·재산관리과”를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세무과·지방세입과·징수과·회계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의3(종전의 별표 1의2) 중 “(제5조의2 관련)”을 “(제5조의3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 별표 6의2, 별표 7부터 별표 12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제국장”을 “전략산업국장”으로 한다.

②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경제국장”을 “전략산업국장”으로, “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④ 원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교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⑤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교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⑥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문화교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⑦ 원주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환경국장”을 “기후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⑧ 원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⑨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국장, 재정국장”을 “건설도시국장,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⑩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⑪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⑫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재정국장, 환경국장”을 “기획재정국장, 기후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⑬ 원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국장”을 “기후환경녹지국장”으로, “환경과”를 “환경정책과”로 한다.

⑭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8조제3항 중 “문화교육국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
· 예규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경제국장의 분장사무(제5조 관련)

1.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2. 저축 추진 및 계몽(啓蒙)에 관한 사항
3. 상공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대부업·대부중개업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시장 개설 관리 및 도·소매업 진흥에 관한 사항
6. 유통근대화 사업 추진 및 시장 육성
7. 공산품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8. 계량기 관리에 관한 사항
9. 광공업 등록 및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10. 지역 벤처산업 육성
11. 이업종 관련 업체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2. 노동단체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13. 노동행정 및 노정업무에 관한 사항
14.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항
15. 고용 안정 및 실업대책 사무
16. 창업보육센터 운영
17. 수출 지원 및 통상과 관련된 사항
18.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9. 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20. 미군 공여지 개발에 관한 사항
21.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2. 에너지 절약 추진 지도
23. 산업체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열관리 지도
24. 전기에 관한 사항
25. 주유소·충전소 등의 계량기 수리·검정에 관한 사항
26. 연료·가스업 인·허가 수급 및 안전 관리 지도·감독

[별표 1의2]

전략산업국장의 분장사무(제5조의2 관련)

1. 차세대 성장산업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 및 추진사업 지원
3. 산·학·연·관 기술협력 지원
4. 과학기술분야 지원사업
5.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추진
7.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기 산업분야 국내외 전시회 개최·참가 지원
9. 첨단 의료기기 융합산업 종합기획 및 조정
10.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법인 및 시설 조성·관리 지원
11. 한방의료산업진흥센터 운영 지원
12.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3. 원주시 AI 정책 및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조정
14. AI 산업 육성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5. AI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AI 시범도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7. 원주시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조정
18. 투자유치 인센티브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
19. 투자유치 홍보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0.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및 행정절차 지원에 관한 사항
21. 신규 산업단지 조성 중장기 계획 수립·조정
22. 신규 산업단지 입지 발굴 및 조성·분양 지원
23. 산업단지 관리 및 기반시설 유지·확충에 관한 사항
24.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재생사업 추진
25. 택지개발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관리 및 추진
26.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27. 군지사 및 원주교도소 이전, 철도 연결 사업, 서원주 역세권 개발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
28. 혁신도시 정책 육성 및 지원
29.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30. 혁신도시 개발계획 관리

31.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상생협력 사업

32.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합동청사 건립 추진

[별표 2]

문화체육관광국장의 분장사무(제6조 관련)

1. 지방예술 및 향토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축제 및 지역문화 이벤트 사무의 추진 및 지원
4. 음반, 비디오, 출판 및 저작권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유산 정책,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
6. 종교업무에 관한 사항
7. 옷·한지산업 육성
8. 국제걷기대회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9. 주요 체육행사 관련 사무
10.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사무
11. 국민 레저시설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2.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13. 관광지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14. 관광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
15. 관광업체 등록 및 지도·육성
16. 관광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7. 시립미술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3]

복지국장의 분장사무(제7조 관련)

1. 사회복지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3.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지도·감독
4.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봉사활동 지원
5. 불우이웃돕기 성금 관리
6. 공공기관 서비스 연계체계 강화
7. 후생시설의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8. 지역 자살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
9. 아동복지시설 및 증진에 관한 사항
10.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저소득층 생활 안정
12.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 피해자 보호
13.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조사 및 대상자 결정 관리
14.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15.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운영
16. 노인복지 증진 및 실버산업 개발 육성
17.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및 공설묘지에 관한 사항
18.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19.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0. 성평등정책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1.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
22.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3. 여성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4. 여성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5. 건전가정의례준칙 실천·지도에 관한 사항

[별표 4]

기후환경녹지국장의 분장사무(제8조 관련)

1.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3. 탄소포인트제도 추진 및 인센티브 지원
4. 기후변화 대응시책 추진
5. 도시공원에 관한 사항
6.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사무
7. 자연공원 관련업무 협의 등에 관한 사항
8. 도시자연공원 지정 변경 및 조성 사무
9. 도로화단 및 로터리 꽃 조성에 관한 사항
10. 가로수 조성 및 관리
11. 그 밖의 녹지공원 사무
12. 환경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4. 환경분쟁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5.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 업무
16. 환경오염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17.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18.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허가 및 신고와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19. 배출방지시설 관리 및 배출부과금에 관한 사항
20. 배출시설 공해 감시와 소음·진동 규제 등에 관한 사항
21.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및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2. 하천·호수 수질검사 및 정화사업
23.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
24.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장 운영
25. 농촌오수처리시설과 축산폐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26. 오·폐수, 생활하수 등 소규모 환경오염 시설에 관한 사항
27.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수질오염물질의 운반 통제 및 수거·처리, 제거명령 등 지도·관리 감독
28. 쓰레기 종량제 및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29. 공중화장실,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시설 설치 관련 사무

30. 진개(塵芥) 수거 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1. 영림계획에 관한 사항
32. 산림 기본통계 및 임산물 생산통계에 관한 사항
33. 양묘 및 조림사업계획 실행 지도
34. 육림 및 산림 보육에 관한 사항
35. 산림병충해 방제
36. 산불 방지에 관한 사항
37. 임산물 생산·수급 및 반출 관리
38. 산림 안의 불법행위 단속
39.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에 관한 사항
40. 임도시설 및 사후 관리
41. 산지 정화 및 산행질서 지도·단속
42. 산림사범 처리
43. 임산물 가공 이용 및 유통 지도에 관한 사항
44. 임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도
45. 임업진흥 및 특수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6. 독립가(篤林家: 모범임업인) 교육 및 임업기술 지도
47. 하천의 보존·관리
48. 공유수면의 매립공사, 준용하천 개수공사의 지도·감독
49. 하천 수풀 제거 및 소하천에 관한 사항

[별표 5]

건설도시국장의 분장사무(제9조 관련)

1. 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도로와 교량 건설
3.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관련 업무 총괄
4. 토지 수용 및 지역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관련 사무
5. 「건설기계관리법」 관련업무
6. 「건설산업기본법」(가스시설 및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등 전문건설업 등록 포함) 관련사무
7. 국가도로·지방도 대외협력 및 추진 총괄
8. 국도·철도변 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9. 오지 개발 및 취약지 대책에 관한 사항
10. 농촌 마을길 포장사업 및 새마을시설물 관리
11.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의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12. 도시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3.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 및 변경 결정
14.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에 관한 사항
15. 도시개발 예정구역의 조성사업관련 사무
16.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17. 공공기여 등 운영 및 관리
18. 도시계획도 관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사무
19.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및 토지종합정보망 관리
20. 도시디자인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1. 도시재개발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2. 재건축 사업에 관한 사항
23. 그 밖의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24. 개별입지 공장설립·창업사업 승인 및 등록
25. 읍·면·동 건축 등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26. 건축협의 허가 및 사용 승인
27.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28.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사항
29. 산지 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
30. 주택 개량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1. 건축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32. 건축물대장 증명 발급
33. 광고물 등 허가 관리에 관한 사항
34. 주택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5. 공영 및 시영주택 건설 및 지도감독
36.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37. 주택자재 생산업 및 주택관리 업체에 관한 사항
38.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9. 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 조정
40. 토지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
41. 지적측량 검사 및 대행법인 지도·감독
42. 지적장비 운영·관리
43. 지적 공부 및 지적통계 관리
44. 토지 이용 및 소유권 변동에 관한 사항
45.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46.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6]

행정국장의 분장사무(제10조 관련)

1. 의식행사 및 의전
2. 보안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국외훈련 및 여행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정원 관리,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5. 행정기구·직제 조정
6. 사무의 전결·위임에 관한 사항
7.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공무원의 임용 및 임용 제청
8. 공무원 현원 관리
9. 공무원의 임면(任免), 징계, 복무 및 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의 인사 평가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관리
11. 공무원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12. 하부행정기관의 행정구역 및 선거 관련 사무
13. 행정 동향과 도지사·시장 순방 관련 사무
14.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15. 국민운동단체 지원 및 사회 진흥에 관한 사항
16. 비영리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17. 주민자치위원회 사무
18. 법제 및 송무 지원 사무
19.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20.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
21. 학교교육 지원과 서비스 제공
22. 원주형 지역교육혁신 사업
23. 대학 관련 교육사업 지원
24. 위기청소년 보호 및 선도대책
25. 청소년 육성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6.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
27. 수리(修理) 및 청사 관리
28. 국유·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29. 은닉(隱匿)된 공유재산 발굴
30. 지역정보화 추진
31. 공인 관리

32.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33.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34. 발간실 운영
35. 전산업무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무
36. 각종 정보자료 구축 및 자료 관리
37. 통신망 및 장비운영에 관한 사항
38. 행정정보망 운영 관리
39. 자치경찰 지원에 관한 사무
40. 그 밖에 다른 국, 실·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별표 6의2]

기획재정국장의 분장사무(제10조의2 관련)

1. 시 행정 종합기획 조정
2. 의회관련 업무의 운영 및 지원
3. 시정 평가 및 심사분석
4. 통계자료의 수립 및 기본통계 관리
5. 주택 및 인구통계조사
6. 지속가능발전 사무 추진
7.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 편성 및 운영
8.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 분석
9. 보조금 관리 및 운용
10. 지방재정 신속집행 운영
11. 국도비 확보 추진
12.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세원 및 과세자료에 관한 사항
15. 시금고 관리·감독
16. 기부금품 통제에 관한 사항
17. 부동산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18. 주택지가 조사계획 수립
19.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에 관한 사항
20. 세외수입 총괄 및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21. 국채·공채·금융 관리에 관한 사항
22. 체납처분 및 정리보류에 관한 사항
23. 압류물건 보관 및 공매에 관한 사항
24. 결산심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25.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26. 회계 및 세출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27. 복식부기 회계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관리
28. 복식부기 회계 결산
29. 시비(市費)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항
30. 물품 구입 및 출납·보관

31. 물품수급계획 및 재물조사

32. 관용차량 관리 및 운용

[별표 7]

보건소, 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1조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원주시 보건소	원주시 원일로 139(일산동)	원주시 일원
문막읍보건지소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11	문막읍 일원
홍업면보건지소	원주시 홍업면 울업1길 3	홍업면 일원
소초면보건지소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2790	소초면 일원
호저면보건지소	원주시 호저면 호저로 429	호저면 일원
지정면보건지소	원주시 지정면 간현로 126	지정면 일원
부론면보건지소	원주시 부론면 법천시장길 63	부론면 일원
귀래면보건지소	원주시 귀래면 북원로 106	귀래면 일원
신림면보건지소	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32	신림면 일원
판부면보건지소	원주시 치악로 1501(관설동)	판부면 일원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원주시 단관공원길 86(단구동)	남원주 일원
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75-2	서원주 일원
학곡 보건진료소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5	학곡 1·2리, 교향 2리
고산 보건진료소	원주시 호저면 광학로 16	옥산리, 고산리, 광격리
산현 보건진료소	원주시 호저면 칠봉로 380	무장 1·2리, 산현리, 매호리, 용곡리
비두 보건진료소	원주시 문막읍 귀문로 956	궁촌 1·2리, 비두 1·2리
단강 보건진료소	원주시 부론면 부귀로 753	단강 1·2리, 정산 1·2·3리
사제 보건진료소	원주시 홍업면 사제로 424	사제 1·2·3·4리, 대안 1·2리
황둔 보건진료소	원주시 신림면 신림황둔로 1213	황둔 1·2리, 송계 1·2리
판대 보건진료소	원주시 지정면 장지길 2	판대 1·2리, 안창 1·2리

[별표 8]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관장사무(제16조 관련)

1. 농어촌 종합대책 및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에 관한 사항
2. 농수산물 수입개방대책
3. 농어촌 관련 시책의 종합 조정 및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4. 식량증산시책에 관한 사항
5. 농업 기상 및 농작물 재해대책
6. 비료, 농약 및 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수급 조절
7.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8. 농지전용 사후관리
9. 농업 한·수해대책
10. 농업용수 개발사업
11. 농업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12. 경지정리 및 기반정리사업
13. 농지 개량 및 수리시설에 관한 사항
14. 농산물 유통 및 가격관리 사무
15. 양곡 수급 및 곡가 조절에 관한 사항
16. 로컬푸드(원주푸드)에 관한 사항
17.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감독 및 어업면허, 허가신고 사무
18. 내수면 자원 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9.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20. 낙농 진흥 및 유축농업 육성
21. 축산물가공, 유통구조 개선 및 가축시장에 관한 사항
22. 가축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항
23. 목초지 조성 개량 및 이용 증진 등 사료 수급에 관한 사항
24. 수의사 및 축산물 사업장 감독
25. 축산업협동조합 지도감독
26. 양봉사업에 관한 사항
27. 가축 개량 증식 및 축산단체에 관한 사항
28. 축산자금 융자 알선 및 가축공제에 관한 사항
29. 우량 종축 생산 보급 및 인공수정 장려사업

30. 부정축산물 생산 및 유통 지도단속
31. 반려동물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32.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3.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
34.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동물등록 및 반려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36. 반려동물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7. 동물병원 및 동물진료 관리에 관한 사항
38. 동물약품 및 동물용 의료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39. 반려동물 관련업 관리에 관한 사항
40. 반려동물 문화 및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1. 농가경영개선 및 강소농 육성에 관한 사항
42. 농특산물 명인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3. 농업인 학습단체(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품목농업인연구회 등) 육성
44. 농업인의날 기념 원주삼토편제스티벌 추진에 관한 사항
45. 농업·농촌에 관한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6.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상설, 순회, 현장119) 교육에 대한 사항
47. 농촌자원(향토·대표음식, 치유농업, 농촌체험) 육성에 관한 사항
48. 농작업 안전 및 재해 예방지도에 관한 사항
49. 농특산물 가공센터 운영 및 소규모 가공 창업장 육성에 관한 사항
50. 농업인 현장애로지도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1. 영농지도 및 신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52. 종자 보급에 관한 사항
53. 쌀품질관리실 운영
54. 강원감영 가을꽃 전시회 추진에 관한 사항
55. 신소득 작목 개발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관한 사항
56. 국가관리 검역병해충 및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
57.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8. 종합검정실, 농산물안전성 분석실, 농업유용미생물배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9. 과학영농시설 및 농업체험학습장 운영에 관한 사항
60. 농업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실증시범 사업

[별표 9]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8조 관련)

사업소명	위치
상하수도사업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로 323(우산동)
도서문화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472-12(단구동)
환경사업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수루니길 116
차량등록사업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만대로 16-4(무실동)
역사박물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로 134(봉산동)
도시정보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만대로 16-4(무실동)
체육시설사업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화5길 703(무실동)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73(반곡동)
원주시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5(서교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33(단계동)

[별표 10]

사업소별 소장의 관장사무(제20조 관련)

1. 상하수도사업소

- 가. 상하수도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 나. 상하수도 확장공사 및 감독
- 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관리 및 상하수도 요금에 관한 사항
- 라. 상하수도사업시설 유지관리
- 마. 상수도사업 배수·급수 관망도 관리 및 정비
- 바.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사. 간이상수도에 관한 사항
- 아. 상하수도사업에 수반되는 용지 매수 및 보상
- 자. 상하수도 관련 사업에 관한 기술적인 사무
- 차. 상하수도 시설 및 자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카. 일상경비 관리
- 타. 시설 안의 토지·관리동·관리사택·도로·수도시설물 유지관리
- 파. 시험약품 및 장비·기기 유지관리
- 하. 불용물품 보관 및 관리
- 거. 정수생산 및 수질 시험
- 너. 정수의 가압 송수와 급수
- 더. 각 사업장 시설의 보안 관리
- 리. 약품검사 및 실험실 유지관리 운영
- 머. 하수·분뇨 및 오수·오니처리시설 관리 운영
- 버. 하수처리 및 분뇨처리 시설·자재·기기 관리
- 서. 하수 및 분뇨처리장 증설 및 보수공사 시행
- 어. 하수시설 종합통제실 운영
- 저. 차집관로 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 처. 하수·분뇨·오수·수질검사 분석 및 수질오염도 측정
- 커. 상수도·음용수·환경자원사업소 침출수 등 수질검사 대행
- 터. 그 밖에 수질시험과 관련된 사항

2. 도서관화진홍원

- 가.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 나. 도서관 정책사업 시행계획 수립
- 다.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 사업
- 라. 분관도서관 운영 및 관리
- 마. 도서관 장서개발 계획 수립
- 바. 향토문화도서 소개 및 보급
- 사. 도서 선택, 안내 및 수서에 관한 사항
- 아. 도서자료의 색인·분류·정리·보관·장서등록·통계 등에 관한 사항
- 자. 각종 기록물의 수집 및 교환 등에 관한 사항
- 차. 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조사에 관한 사항
- 카. 도서자료 열람·대출 및 복사 등에 관한 사항
- 타. 이동도서관 운영 및 독서관장·신착도서자료 등 홍보안내
- 파. 각종 도서관 관련 모임 및 문화행사 기획·추진·지원사무
- 하. 그 밖에 도서관 시설의 장비·기기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거. 학습관 운영
- 너.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수립 추진
- 더.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러.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
- 머. 수강생 직업 알선에 관한 사항
- 버. 시민의 취미·교양강좌 등 교육·능력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서. 원주건강문화센터 청사 및 부속시설 유지 관리
- 어.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3. 환경사업소

- 가. 원주시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운영투자(BTO) 관리 감독 및 민간위탁금 지급
- 나. 원주시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승인
- 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반입량 통계관리
- 라.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
- 마. 고형연료제품 판매수입, 세외수입(재활용품, EPR지원금, 매립가스) 징수
- 바. 주민감시요원 복무관리

- 사. 일반폐기물 반입검사, 시료채취 및 분석
- 아. 침출수 이송관로 및 가압장 관리
- 자.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
- 차. 매립가스 발전사업 관리
- 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사후환경영향평가 관리
- 타. 매립장 폐기물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저감계획 수립·시행
- 파.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업무
- 하. 민간운영투자(BTO) 종료 시 시설물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차량등록사업소

- 가.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전입, 말소, 근저당, 압류를 포함한다)업무
- 나. 자동차 검사(구조변경, 검사를 포함한다)업무
- 다. 자동차 등록원부 및 제증명 발급
- 라. 이륜 소형자동차 업무
- 마.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 바.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관리(조회, 청문,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다)
- 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택시미터기 검정사무
- 아. 그 밖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 사후관리(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업무
- 자. 차량(자동차·건설기계·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등록 관련 취득·등록세 부과에 관한 사항
- 차. 자치법규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된 지방세 사무

5. 역사박물관

- 가. 박물관 자료와 향토사료 수집 및 연구
- 나. 소장품 보관, 진열, 고증, 평가, 수리 묘사 및 복원
- 다. 향토사료 정리 및 미개발 향토사 연구
- 라. 향토사료 조사 및 연구
- 마.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

6. 도시정보센터

- 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

- 나.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추진 관리
- 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라. 도시정보센터 운영
- 마. CCTV 통합관제 및 통합관제실 운영
- 바. CCTV 인프라 구축관리 및 영상정보 보안관리

7. 체육시설사업소

- 가. 남부체육시설, 서부체육시설, 문막체육시설 및 드림체육관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체육시설 입장권, 관람권 판매 및 수입 관리
- 다. 시설 안의 경기·공연 등 진행에 관한 협조 및 지원
- 라. 체육시설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 마. 체육시설 안의 조경 및 부대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바. 체육시설 안의 전기·통신·기계·용구·비품 및 냉난방 관리
- 사. 그 밖에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8.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 가. 동부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나. 학습관 반곡분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다. 남원주건강생활지원센터 혁신분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라. 아동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9. 원주시서울사무소

- 가.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 조정 및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 나. 국비확보 지원활동 등 중앙 정관계 네트워크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시정과 관련한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10.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가. 도매시장 기본운영계획 수립
- 나. 도매시장 활성화
- 다. 도매법인 지정 관리

라. 중도매인 등 시장관계자 선정 관리

마. 유통정보 수집 및 분석

바. 유사 도매시장 정비 및 단속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경제국 · 안전교통국 · 문화교육국 · 복지국 · 환경국 · 도시국 · 행정국 · 재정국</u> 을 둔다.	제3조(국의 설치) ----- ----- <u>경제국 · 전략산업국 · 안전교통국 · 문화체육관광국 · 복지국 · 기후환경녹지국 · 건설도시국 · 행정국 · 기획재정국</u> ---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 · 보좌기관의 설치) ① 시장 밑에 <u>시정홍보실</u> 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 · 보좌기관의 설치) ① ----- -- <u>시민주권담당관과 시정소통실</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경제국에 두는 과) ① 경제국에 <u>경제진흥과 · 기업지원일자리과 · 투자유치과 · 첨단산업과 · 지역개발과</u> 를 둔다.	제5조(경제국에 두는 과) ① ----- --- <u>경제진흥과 · 기업지원일자리과 · 도시재생과 · 에너지전환과</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5조의2(전략산업국에 두는 과) ① <u>전략산업국에 첨단산업과 · AI혁신과 · 투자유치과 · 지역개발과 · 혁신도시과</u> 를 둔다. ② <u>전략산업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의2와 같다.</u>
제5조의2(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① (생략)	제5조의3(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교통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6조(문화교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과·교
육청소년과·관광과·체육과를
둔다.

② 문화교육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
국에 복지정책과·보육아동과
·생활보장과·경로복지과·장
애훈복지과·여성가족과를 둔
다.

② (생 략)

제8조(환경국에 두는 과) ① 환경
국에 환경과·기후대응과·에
너지과·생태하천과·자원순환
과·공원녹지과·산림과를 둔
다.

② 환경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제9조(도시국에 두는 과) ① 도시
국에 건설과·도시계획과·도

② -----
별표 1의3과 --.

제6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
과·문화유산과·체육과·관광
과·시립미술관건립추진단을 -
---.

② 문화체육관광국장-----
-----.

제7조(복지국에 두는 과) ① ----
--- 복지정책과·보육아동과·
생활보장과·경로복지과·통합
돌봄과·장애인복지과·성평등
가족과-----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기후환경녹지국에 두는 과)
① 기후환경녹지국에 기후정책
과·환경정책과·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산림
과-----
--.

② 기후환경녹지국장-----
-----.

제9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도시계

<u>시재생과 · 허가과 · 건축과 · 주택과 · 토지관리과</u>를 둔다. ② <u>도시국장</u>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제10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u>총무과 · 기획과 · 자치행정과 · 회계과 · 정보통신과</u>를 둔다. ② (생략) 제10조의2(<u>재정국에 두는 과</u>) ① 재정국에 <u>예산과 · 세무과 · 지방세입과 · 징수과 · 재산관리과</u>를 둔다. ② <u>재정국장</u>의 분장사무는 별표 6의2와 같다. [별표 1의2] <u>안전교통국장의 관장사무</u>(제5조의2 관련)	<u>획과 · 허가과 · 건축과 · 주택과 · 토지관리과</u>-----. ② <u>건설도시국장</u>-----. 제10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 <u>총무과 · 자치행정과 · 교육청소년과 · 재산관리과 · 정보통신과</u>-----.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u>기획재정국에 두는 과</u>) ① <u>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 세무과 · 지방세입과 · 징수과 · 회계과</u>-----. ② <u>기획재정국장</u>-----. [별표 1의3] -----(<u>제5조의3</u> 관련)
---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5호, 2026. 6. 23., 일부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 ④ (생략)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111명 증원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연구	지도	별정
정 원	현 행		14	101	422	544	545	301	7	15	37	5
	증 원	+111	+1	+7	+29	+32	+29	+6		+5		+2
	조 정		15	108	451	576	574	307	7	20	37	7

나. 관련조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 3. (생 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생 략)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정원조정에 따라 증액되는 인건비에 대하여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추계합니다.

나. 추계결과 : 6,495,162천 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증원	6,495,162천 원	◦4급(연봉제) ⇒ 111,825천 원 × 1명 = 111,825천 원 ◦5급(연봉제) ⇒ 92,105천 원 × 7명 = 644,732천 원 ◦6급 23호봉 기준 ⇒ 73,371천 원 × 29명 = 2,127,746천 원 ◦7급 12호봉 기준 ⇒ 55,251천 원 × 32명 = 1,768,035천 원 ◦8급 5호봉 기준 ⇒ 40,740천 원 × 29명 = 1,181,472천 원 ◦9급 4호봉 기준 ⇒ 38,612천 원 × 6명 = 231,670천 원 ◦연구사 16호봉 기준 ⇒ 63,836천 원 × 5명 = 319,180천 원 ◦별정직(7급 상당) 기준 ⇒ 55,251천 원 × 2명 = 110,502천 원	2026년 기준

다.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원주시 행정국 총무과장 박경희
연락처	(033) 737-22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세 입							
			해	당	없	음	
세 출		6,652,345	6,813,332	6,978,215	7,147,087	7,320,047	34,911,026
일반회계		6,652,345	6,813,332	6,978,215	7,147,087	7,320,047	34,911,026
재원 조달		6,652,345	6,813,332	6,978,215	7,147,087	7,320,047	34,911,026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652,345	6,813,332	6,978,215	7,147,087	7,320,047	34,911,026
	지방세	6,652,345	6,813,332	6,978,215	7,147,087	7,320,047	34,911,026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고시된 공무원보수인상률의 평균 2.42% 적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검토보고

□ 의견접수 : 2026. 8. 28. ~ 9. 28.

□ 접수건수 : 1건(미반영)

의견제출 기관(부서)	의견
김00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 의견요지: 농업 관련 과 신설 및 동물보호과 타 국 배치 1. 농업지원과 또는 농업인안전과 신설 - 농업인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영농지원과 농업인교육, 시험연구와 신기술 보급 등에 집중 - 농업인 안전관리팀, 농업인 재해안전팀, 농업기계 교육수리임대팀, 농업인 영농지원팀, 농업인 신기술(스마트 팜)팀 등 신설 - 전문직 기능 활성화와 인사 체증 해소: 농촌지도직, 공업직, 농업직 2. “동물보호과”를 복지국 또는 환경국에 배치 검토 - 현실의 축산정책과 상반됨
검토의견	사유
미반영	· 농업인 안전 강화, 농업인 교육, 신기술 보급 등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행정수요와 농업정책 방향을 판단하여 인력보강을 통한 기능 강화, 과 신설 등을 검토할 계획임. 또한, 과 신설 검토 시 농촌지도직·공업직·농업직 등 전문 직렬의 기능 활성화도 함께 고려하겠음. · “동물보호과” 사무는 현재 “축산과 동물복지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동물보호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의 기능적 확대 및 담당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국)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배치하였음. · 조례 개정 이후에도 농업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합리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6. 10. .

제 출 자: 원주시장

1. 제안이유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시민주권시대’ 가치 실현 및 주요 시정현안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및 AI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정원을 조정함(111명 증)

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

구분	계	정무	일반직					별정 전문 경력관	연구	지도
			3급	4급	5급	6급이하				
현행	1,993	1	1	14	101	1,812	7	5	15	37
조정	2,104	1	1	15	108	1,908	7	7	20	37
증감	증 111			증 1	증 7	증 96		증 2	증 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신·구조문대비표[붙임]

다. 비용추계서[붙임]

라. 입법예고(2026. 8. 28. ~ 9. 17), 의견제출 없음

원주시 조례 제 호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993명”을 “2,10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943명”을 “2,05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50명”을 “51명”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종별	직급별	총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총	계	2,104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2,039	-				
	3급	1	1				
	4급	15	9	2	2	1	1
	5급	108	52	11	15	27	3
	6급이하 소계	1,908	-				
	전문경력관 소계	7	-				
별정직	계	7	-				
	5급상당	1					
	6급상당	2					
	7급상당	4					
연구직	계	20	-				
	연구사	20	-				
지도직	계	37	-				
	지도관	2	-				
	지도사	35					

[별표 4]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 및 존속기간(제6조 관련)

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총계	존속기간
계			4	
본청	일반직	7급	1	2029.12.31.까지
사업소	연구직	연구사	1	2028.12.31.까지
			2	2029.12.31.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1,993명</u> 으로 하며,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 <u>2,104명</u> ----- ----- -----.
1. 집행기관의 정원: <u>1,943명</u>	1. ----- <u>2,053명</u>
2. 의회사무국의 정원: <u>50명</u>	2. ----- <u>51명</u>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111명 증원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연구	지도	별정
정 원	현 행		14	101	422	544	545	301	7	15	37	5
	증 원	+111	+1	+7	+29	+32	+29	+6		+5		+2
	조 정		15	108	451	576	574	307	7	20	37	7

나. 관련조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 3. (생 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생 략)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정원조정에 따라 증액되는 인건비에 대하여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추계합니다.

나. 추계결과 : 6,495,162천 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증원	6,495,162천 원	◦4급(연봉제) ⇒ 111,825천 원 × 1명 = 111,825천 원 ◦5급(연봉제) ⇒ 92,105천 원 × 7명 = 644,732천 원 ◦6급 23호봉 기준 ⇒ 73,371천 원 × 29명 = 2,127,746천 원 ◦7급 12호봉 기준 ⇒ 55,251천 원 × 32명 = 1,768,035천 원 ◦8급 5호봉 기준 ⇒ 40,740천 원 × 29명 = 1,181,472천 원 ◦9급 4호봉 기준 ⇒ 38,612천 원 × 6명 = 231,670천 원 ◦연구사 16호봉 기준 ⇒ 63,836천 원 × 5명 = 319,180천 원 ◦별정직(7급 상당) 기준 ⇒ 55,251천 원 × 2명 = 110,502천 원	2026년 기준

다.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원주시 행정국 총무과장 박경희
연락처	(033) 737-22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세 입							
			해	당	없	음	
세 출		6,652,345	6,813,332	6,978,215	7,147,087	7,320,047	34,911,026
일반회계		6,652,345	6,813,332	6,978,215	7,147,087	7,320,047	34,911,026
재원 조달		6,652,345	6,813,332	6,978,215	7,147,087	7,320,047	34,911,026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652,345	6,813,332	6,978,215	7,147,087	7,320,047	34,911,026
	지방세	6,652,345	6,813,332	6,978,215	7,147,087	7,320,047	34,911,026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고시된 공무원보수인상률의 평균 2.42% 적용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6. . .

제 출 자: 원 주 시 장

1. 제안이유

시민주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민참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다. 위원의 임기·해촉 및 비밀유지·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라. 전체회의, 운영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마. 시민의견 수렴 및 공론화의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위원회의 정책제안과 관계 부서의 검토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사.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및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붙임]

라. 입법예고(2026. 8. 28. ~ 9. 17.), 의견제출 없음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주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며 숙의·공론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시민주권”이란 시민이 시의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의 기획·집행·평가 및 환류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론화”란 시의 주요 정책이나 지역 현안에 대하여 시민,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시민위원”이란 제6조에 따른 공개모집을 거쳐 위촉된 시민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주권 및 시민참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시정 참여와 숙의·공론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주시 시민주권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1. 시 주요 정책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참여와 공론화에 관한 사항
2. 시정 주요과제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관점의 숙의와 정책 보완에 관한 사항
3. 정책의 기획·집행·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분과위원회에서 발굴·제안한 주요 정책 및 지역 현안에 관한 사항
5.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논의 및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고유한 심의·의결·조정 등의 기능과 권한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대체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가 논의하는 사항이 다른 위원회 또는 관계 기관의 소관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또는 관계 기관과 협의·연계 하거나 시장에게 소관 기관으로의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수는 위원회의 기능, 시민참여의 규모, 분과위원회의 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 소속 공무원 및 원주시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은 시장이 위촉하고, 제4호의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된 시민
2. 분과위원회 소관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관계 부서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원주시의원
4. 분과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 국·소·원장

⑤ 위원회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이 위원 총수의 100분의 8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위원의 모집 및 선정) ① 시민위원은 모집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② 시민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성별·연령별 균형, 다양한 계층의 참여 및 희망 분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③ 시장은 시민위원을 모집할 때 모집인원,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모집인원, 제출서류 및 그 밖에 시민위원의 모집과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구성 및 운영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간 임기의 형평성과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민위원은 원주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출한 날에 위원직을 상실한다.

⑤ 원주시의원인 위촉직 위원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날에 위원직을 상실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① 위원 및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된 후 또는

회의 참석이 종료된 후에도 적용한다.

제10조(전체회의) ① 전체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분과위원회 간의 의견을 공유·조정하기 위하여 개최한다.

②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이 전체회의 개최를 요청한 경우
2. 위원장이 전체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이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③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운영회의)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분과위원회 간 협의·조정을 위하여 운영회의를 둔다.

② 운영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③ 운영회의는 격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운영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전체회의의 운영 및 안건 준비에 관한 사항
2. 분과위원회의 공동의제 선정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정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운영회의에 전체회의 상정 안건이나 분과위원회의 공동의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⑥ 운영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분야별 정책의제를 발굴·논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을 두며,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소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는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원주시의원 1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시 소속 국·소·원장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원주시의원의 분과 배치는 해당 의원의 희망 분과 또는 원주시의회회 추천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운영회의에서 공동의제로 선정된 사항에 대한 분야별 논의

2. 분과별 주요 정책 및 현안의 발굴

3. 분과 소관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정책 제안

4. 전체회의 또는 운영회의에 제출할 안건의 발굴 및 제안

⑦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⑧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⑨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시장은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의견의 시정 반영을 위하여 관계 부서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시민의견 수렴 및 공론화) ① 시장은 시의 주요 정책 또는 시정 현안에 관하여 폭넓은 시민의견 수렴이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민의견 수렴 또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에게 그 추진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추진을 지원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 및 공론화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토론회 또는 공청회

2. 시민참여형 숙의토론

3. 설문조사 등 시민의견조사

4.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

5. 그 밖에 시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 및 공론화의 결과는 제15조에 따른 정책제안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 이미 실시 중이거나 종료된 동일한 주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복 실시를 피한다.

제14조(시민의견 수렴 및 공론화 대상의 제외)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 또는 공론화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시민의견 수렴 및 공론화가 제한되거나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항

2. 수사·재판 또는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해당 절차의 공정성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3.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감사의 공정성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개인의 사생활 또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특정 개인의 권리·의무 또는 개별 민원의 해결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 다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시의 권한 또는 소관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7.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별도의 심의·의결·조정 등의 절차가 정해져 있고, 시민의견 수렴 및 공론화가 그 절차의 공정성이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제안을 제1항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정책제안 및 검토결과) ① 위원회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시장에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제안을 관계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계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책제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토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영, 일부 반영 또는 미반영 여부

2. 반영하는 경우 구체적인 추진계획

3. 일부 반영 또는 미반영하는 경우 그 사유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회

의, 자료 작성, 시민의견 수렴, 교육 및 연수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의 역량 강화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위원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일부개정]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예상 연간 비용: 98,700천 원

가. 제10조(전체회의), 제11조(운영회의), 제12조(분과위원회) 관련

- 참석수당: 60,000,000원 = 100,000원 x 100명 x 6회

나. 제1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관련

- 연간 활동보고서 발간: 7,500,000원 = 권당 25,000원 x 300부

- 선진사례 견학: 20,000,000원 = 500,000원 x 40명

- 언론,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10,000,000원

다. 제17조(포상) 관련

- 활동 우수·기여 위원 포상: 1,200,000원 = 120,000원 x 10명

2. 미첨부 근거 규정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원주시 행정국 기획과장 장일현
연락처	(033) 737-2140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 2021. 7. 15.] (일부개정) 2021.07.15. 조례 제1714호

제3장 시민주권회의

제17조(시민주권회의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주권회의(이하 “시민주권회의”라 한다)를 둔다.

1. 시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2. 시의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해결
3. 시민참여기본계획의 수립
4.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과제 발굴 및 행정 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 시민주권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과 시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민주권회의의 위원은 시민, 시의원, 시의 실·국장급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시민주권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시민주권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자문대상 안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 해당 자문 대상 안건을 용역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시민주권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시민주권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시민주권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시민주권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인 시의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시민주권회의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운영) ① 시민주권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시민주권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민주권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참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참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24조(기획운영위원회) ① 시민주권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민주권회의 소속으로 기획운영위원회를 둔다.

1. 시민주권회의에 안건 상정 결정에 관한 사항

2. 시민주권회의 개최에 따른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주권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획운영위원회는 기획운영위원회의 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2. 18.>

③ 운영위원장은 기획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기획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2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과 시민주권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민주권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기획운영위원회는 시장 또는 시민주권회의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기획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문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회의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장은 기획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시민주권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분과위원회) ① 시민주권회의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17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시민주권회의 소속으

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 소속으로 분과위원회 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시장 또는 시민주권회의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은 시민주권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민주권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회의, 의사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6조(특별위원회) ① 시민주권회의 위원장은 시 주요정책 중 특별한 사항이나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민주권회의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시민주권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주권회의 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또는 시민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시민주권회의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

나 특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⑥ 특별위원회는 설치 목적의 자문 업무를 마치면 자동 해산한다.

⑦ 특별위원회의 회의, 의사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7조(협조요청) ① 위원장, 운영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시민주권회의, 기획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행정·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위원회 등의 회의 참석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 운영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위원회 등이 제17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장에게 연구·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장은 연구·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연구·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연구·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조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수당 등) ① 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② 제27조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6. . .

제 출 자: 원주시장

1. 제안이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파견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등의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 집행 및 정산을 위한 관리·감독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원봉사센터의 보조금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및 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공무원 파견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 나.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관련 지침 등 준수사항을 명시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붙임]
- 나. 관계법령 발췌서[붙임]
- 다. 입법예고(2026. 9. 4. ~ 9. 28.), 의견제출 없음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보조금”을 “보조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재정 지원)”을 “(재정 및 운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센터는 교부받은 보조금등을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센터는 보조금등의 집행잔액 및 이자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정산·반환한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원봉사센터는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관계 법령, 보조금등의 교

부조건 및 주무부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자원봉사 센터에 비치하고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생략) ② (생략) ③ 자원봉사센터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 연금 또는 보조금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출 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보조 금등”이라 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9조(재정 지원) 시장은 자원봉 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정 및 운영 지원) ① 시장 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센 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 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는 교부받은 보조금등을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 여야 한다.
<신설>	② 자원봉사센터는 보조금등의 집행잔액 및 이자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정산·반환한다.
<신설>	③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 자원봉사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자원봉사센터는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관계 법령, 보조금등의 교부조건 및 주무부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자원봉사센터에 비치하고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④ (생략)

⑤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공무원 파견에 따른 파견수당 지급

나. 관련조문: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2(파견근무),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원주시 6급 공무원 1명 자원봉사센터 파견(2027년 1월 기준)
- 파견수당: 40만 원/월

나. 추계 결과

- 당해연도(2027년): 4,800천 원(40만원*12개월)
- 이후연도(2028년 ~): 4,800천 원

다. 재원조달 방안: 출연금(시비)

3. 작성자

작성자	원주시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장성미
연락처	(033) 737-2250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26. . .

제 출 자: 원 주 시 장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현대화사업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례[붙임]

라. 입법예고(2026. 8. 28. ~ 9. 17.), 의견제출 없음

원주시 조례 제 호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u>2026</u> 년 <u>12월 31일</u> 까지 면제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 ----- ----- ----- ----- ----- ----- ----- <u>2029</u> 년 <u>12월 31일</u>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전기·가스·화재·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안전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3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제56조(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43조에 따른 환지, 보류지 및 체비지에 대해서는 국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례

□ 「동해시 시세 감면조례」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제7조의3(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시세 감면 조례 일몰 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2. 미첨부 근거 규정

-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세입의 순감소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세입 순감소액 1억원 미만
- 감소액 추계 (단위:천원)

구 분	세 목	감면액		
		2024년	2025년	2026년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재산세	0	0	0

4. 작성자

작성자	원주시 지방세입과장 민영미
연락처	(033) 737 - 2350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6. . .

제 출 자 : 원 주 시 장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민원처리기준표의 농업기계임대신청서 징구 폐지 정비에 따른 민원인 업무 편의 증대 및 조례 현행화를 통해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소의 기능을 구체화함(안 제5조)

- 농업기계 사용자 교육 및 임대사업 수요조사·홍보 추가

나. 농업기계종합보험 가입 신설(안 제6조제4항)

- 예산의 범위에서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다. 임대농업기계 불용결정 및 불용품의 매각·폐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나. 신·구조문대비표[붙임]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라. 입법예고(2026. 7. 24. ~ 8. 14.), 의견제출 없음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업기계 사용자 교육
5. 농업기계 임대사업 수요조사 및 홍보

제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임대농업기계의 불용결정 및 불용품의 매각·폐기 등 처분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원주시 물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제3호 중 “사람”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을 “사전에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입고시간은 일출시부터 일몰 시”를 “출고 및 입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한다.

제9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임대료는 임대 농기계 사용료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기간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7조제3호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임대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발부하는 임대료 고지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접수된 임대신청은 개정규정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

-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체결된 임대계약에 따른 임대료 납부 및 안전관리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임대료(1일)	비 고
1) 100만원 미만	8,500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임대료 시행기준 -15% 적용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2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2,75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6,15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9,55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3,8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27,2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1,02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34,85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39,1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55,25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72,25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93,5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10,5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36,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57,25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65,750원	
18) 4,500만원 이상	178,500원	

2. 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 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농업기계 임대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원 주 시		주소			
		성명		성별	
		전화번호			
임대차 농업기계					
농업기계명		수량			
부속작업기		수량			
		수량			
		수량			
임대기간					
임대료					
농업기계 이용계획					
작업종류					
작업면적					
임대계약 조건 1. 임차인은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이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안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대받은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본인의 책임으로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 및 운송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이 임대받은 농업기계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이용 중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임대받은 농업기계의 유지·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을 말한다)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업계 임대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차인 날인 또는 서명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제5조(기능) ----- -----. 1. ~ 3. (현행과 같음) 4. <u>농업기계 사용자 교육</u> 5. <u>농업기계 임대사업 수요조사 및 홍보</u>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 ③ (생략) <u><신설></u> <u><신설></u>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u> ⑤ <u>시장은 임대농업기계의 불용 결정 및 불용품의 매각·폐기 등 처분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원주시 물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제7조(임대 대상자) 임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시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u>사람</u>	제7조(임대 대상자)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u>농업인</u>

제8조(임대신청 및 기준) ① 농업
기계를 임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
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생 략)

③ 임대 기간은 해당 농업기계
의 출고일에서 입고일까지 일단
위로 계산하되 입고시간은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로 한다. 다
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9조(안전관리) 시장은 임대 대
상자에 대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전 임대받고자 하
는 자의 부담으로 보험에 가
입하여야 한다.

2.·3. (생 략)

제10조(임대료 등) ① (생 략)

② 임대료의 납부기간은 이용허
가일부터 이용일 전까지 농업기
계임대료를 시금고에 납부하여

제8조(임대신청 및 기준) ① ----

사전에 신청-----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출고 및 입고 시

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

④·⑤ (현행과 같음)

제9조(안전관리) -----

-----.

<삭 제>

2.·3. (현행과 같음)

제10조(임대료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임대료는 임대 농기계 사용

료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고지서

에 표기된 납부기간까지 시금고

야 한다.

③ ~ ⑤ (생 략)

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농업기계종합보험 가입비용(예상): 22,000천 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
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원주시 농촌자원과 구태연
연락처	(033)737-4161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26. . .

제 출 자: 원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새로 운영할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사용료 및 이용료를 정함으로써 시설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근거 마련
-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되어 공공체육시설의 휴관일 추가
- 다.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 군인 등을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으로 추가
- 라. 공공체육시설의 예약 및 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정 신설
- 마.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사항 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의 위반행위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근거 신설
- 바. 공공체육시설을 위탁 대행 중인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 가. 원주서부 복합체육센터의 체육시설 명칭, 위치, 사용료 및 이용료 기준을 정함(안 별표 1, 별표 2)

1) 시설명: 원주서부 복합체육센터

2) 시설물: 수영장,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나. 백운테니스장의 사용료 및 이용료 기준을 정함(안 별표 2)

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제헌절이 국경일로 재지정되어 체육시설의 휴관일을 추가함(안 별표 1의2)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이용료 50% 감면 대상으로 추가함(안 별표 6)

마.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및 예약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바.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취소 처분을 받은 자의 위반행위를 30일간 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함(안 제6조)

사.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 효력 발생일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신·구조문대비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라. 입법예고(2026. 8. 28. ~ 9. 17.), 의견제출 없음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체육시설의 원활한 사용 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예약시스템의 운영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⑦ 시장은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약 현황을 제6항에 따른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 상대방의 명칭(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을 제외한 처분 내용에 한정한다), 취소 사유 및 취소 일자를 처분일부터 30일간 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수탁자는 해지 효력발생일부터 1년간 이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의 위탁·대행 업

무에 참여할 수 없다.

별표 1, 별표 1의 2, 별표 2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취소 처분 사항 게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탁운영 참여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명칭	위치
원주종합운동장	원주시 서원대로 311
원주종합체육관	원주시 서원대로 281
치악체육관	원주시 서원대로 279
백운체육관	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1800
원주테니스장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231
백운테니스장	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1794
치악테니스장	원주시 서원대로 279
반곡테니스장	원주시 반곡동 산18-1
원주양궁장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231
원주궁도장	원주시 단구로 154
원주국민체육센터	원주시 남원로 551
원주국민체육센터 풋살구장	원주시 남원로 565
론볼링·X-게임장	
인공암벽장	
엘리트체육관	원주시 남원로 565
무실체육공원(축구장, 다목적구장)	원주시 솔우물2길 47
원주드림체육관	원주시 현충로 53-1
태장체육단지(야구장, 소프트볼장, 유소년 야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풋살장)	원주시 치악로 2239-46
환경체육단지(축구장, 풋살구장, 다목적구장, 족구장)	원주시 호저로 127
혁신도시 체육공원(축구장,다목적구장,테니스장)	원주시 봉대길 108
혁신도시 체육시설(양궁장,테니스장)	원주시 배울로 215
문막생활체육시설(축구장,다목적구장)	원주시 원문로 1771
원주배드민턴전용경기장	원주시 한지공원길 117-2
원주남부 복합체육센터	원주시 이화5길 70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원주시 건강로 73
농민문화체육센터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21
원주서부 복합체육센터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 260

[별표 1의2]

체육시설의 사용·이용시간 및 휴관일(제9조 관련)

1.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구분	하 계 (3월 ~ 10월)	동 계 (11월 ~ 다음해 2월)	비고
조기	06:00 ~ 09:00	06:00 ~ 09:00	
주간	09:00 ~ 19:00	09:00 ~ 18:00	
야간	19:00 ~ 22:00	18:00 ~ 22:00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2. 체육시설의 이용시간

평일	06:00 ~ 21:00
토요일 및 공휴일	06:00 ~ 18:00

3. 휴관일

가. 매주 월요일(제외시설: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원주남부 복합체육센터, 원주서부 복합체육센터), 매주 금요일(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원주남부 복합체육센터, 원주서부 복합체육센터),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5월 1일(근로자의 날)

나. 국경일 중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마. 시장이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2]

사용료·이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와 사용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체육시설 이용은 1일 1회 2시간(드림체육관은 2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정하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1일 최대 이용시간 및 예약 방식을 **통합예약시스템**에 최소 한달 전에 사전공지 후 변경할 수 있다.
- 나. 토·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
- 다. 1일 사용 시 8시간 사용료를 부과한다. 다만, 농민문화체육센터는 따로 정한다.
- 라. 실외체육시설의 조명사용 시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마. 부가가치세, 전기료 및 냉·난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 부과한다.
- 바.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단의 연습 및 공식경기에 필요한 시설에는 다목적 실, 헬스장, 복리시설, 경기 관련 시설 등을 포함한다.
- 사. 수영장의 월회원은 강습을 받는 월회원(강습)과 강습을 받지 않는 월회원(자유수영)으로 구분한다.
- 아. 수영장 레인대관의 경우 주말 및 공휴일에 한정하고 동 시간대에 2레인 이상 대관은 제한할 수 있다.
- 자. 풋살장은 최소 8명 이상 함께 이용해야 한다.
- 차. 이 표에서 사용료는 전용 사용료로, 이용료는 개인별 연습이용료로 표기한다.

2. 개별기준

가. 종합운동장

1) 전용 사용료

사용목적		사용료(원)	사용시간	비고
체육경기	육상트랙	50,000	4시간	
	축구장	150,000		
체육활동		200,000		
일반행사		300,000		

나. 원주종합체육관

1) 전용 사용료

사용목적	사용료(원)	사용시간	비고
체육경기	60,000	4시간	
체육활동	120,000		
일반행사	300,000		

다. 치악체육관

1) 전용 사용료

사용목적	사용료(원)	사용시간	비고
체육경기	40,000	4시간	
체육활동	80,000		
일반행사	200,000		

라. 원주테니스장

1) 전용 사용료

사용구분	사용목적	사용료(원)	사용시간	비고
실내	체육경기	40,000	2시간	
	체육활동	80,000		
실외 (4면 사용)	체육경기	24,000		
	체육활동	48,000		
실외 (9면 사용)	체육경기	54,000		
	체육활동	108,000		

2) 개인별 연습이용료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요금기준	비고
실내	코트당	어른	9,000	1회 1시간	
		어린이, 청소년, 노인	4,500		
실외	코트당	어른	6,000		
		어린이, 청소년, 노인	3,000		
	월회원	어른	75,000		
		어린이, 청소년, 노인	37,500		

마. 치악테니스장

1) 전용 사용료

사용목적	사용료(원)	사용시간	비고
체육경기	50,000	2시간	6면 사용
체육활동	100,000		

2) 개인별 연습이용료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요금기준	비고
실외	코트당	어른	6,000	1회 1시간	
		어린이, 청소년, 노인	3,000		
	월회원	어른	75,000		
		어린이, 청소년, 노인	37,500		

바. 반곡테니스장

1) 전용 사용료

사용목적	사용료(원)	사용시간	비고
체육경기	18,000	2시간	3면 사용
체육활동	36,000		

2) 개인별 연습이용료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요금기준	비고
실외	코트당	어른	6,000	1회 1시간	
		어린이, 청소년, 노인	3,000		
	월회원	어른	75,000		
		어린이, 청소년, 노인	37,500		

사. 원주혁신도시체육공원

1) 전용 사용료

구분	사용목적	사용료(원)	사용시간	비고
테니스장 (2면)	체육경기	12,000	2시간	
	체육활동	24,000		
축구장 (인조잔디)	체육경기	20,000	2시간	
	체육활동	40,000		
다목적구장 (인조잔디)	무료			

2) 개인별 연습이용료

구분	이용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요금기준	비고
테니스장	실외	코트당	어른	6,000	1회 1시간
			어린이, 청소년, 노인	3,000	
		월회원	어른	75,000	
			어린이, 청소년, 노인	37,500	

아. 원주양궁장

1) 전용 사용료

사용목적	사용료(원)	사용시간	비고
체육경기	50,000	4시간	
체육활동	100,000		

자. 원주궁도장

1) 전용 사용료

사용목적	사용료(원)	사용시간	비고
체육경기	40,000	4시간	
체육활동	80,000		

차. 원주국민체육센터

1) 전용 사용료

구분	사용목적	사용료(원)	사용시간	비고
풋살구장 (2면)	체육경기	50,000	4시간	
	체육활동	100,000		
농구장, 다목적체육관	체육경기	30,000		
	체육활동	50,000		
수영장 (레인 대관)	체육활동	100,000	1시간	주말 및 공휴일 1회 1레인 1시간 기준(최대 2시간)
인공암벽장	체육경기	50,000	4시간	
	체육활동	100,000		

2) 개인별 연습이용료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요금기준	비고	
농구장, 다목적구장	일일 입장	어른		2,000	1회 2시간	
		어린이, 군인 청소년, 노인		1,000		
		단체(1인당)		1,500		
수영장	어른	월회원 (강습)	주4회	60,000	1회 2시간	
			주3회	55,000		
			주2회	50,000		
		월회원(자유수영)		45,000		
		일일입장		3,500		
	군인, 청소년	월회원 (강습)	주4회	45,000		
			주3회	40,000		
			주2회	38,000		
		월회원(자유수영)		35,000		
		일일입장		2,500		
	어린이	월회원 (강습)	주4회	40,000		
			주3회	35,000		
			주2회	33,000		
		월회원(자유수영)		30,000		
		일일입장		2,000		
	노인	월회원 (강습)	주4회	30,000		
			주3회	27,500		
			주2회	25,000		
		월회원(자유수영)		22,500		
		일일입장		1,500		
	아쿠아 로빅	월회원 (강습)	주5회	50,000		
			주4회	40,000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요금기준	비고	
체력단련실	어른	월회원		35,000	1회 2시간	
		일일입장		2,500		
	군인, 청소년	월회원		25,000		
		일일입장		2,000		
	노인	월회원		17,500		
		일일입장		1,000		
풋살구장	일일 입장	어른	면당	10,000	1회 1시간	
		어린이, 청소년, 노인	면당	5,000		
인공암벽장	어른	월회원		35,000	1회 2시간	
		일일입장		2,000		
	군인, 청소년	월회원		25,000		
		일일입장		1,500		
	어린이, 노인	월회원		18,000		
		일일입장		1,000		
	단체	단체(1인당)		1,500		

카. 원주드림체육관

1) 전용 사용료

구분	사용목적	사용료(원)	사용시간	비고
농구장, 다목적체육관	체육경기	30,000	4시간	
	체육활동	50,000		
수영장 (레인 대관)	체육활동	100,000	1시간	주말 및 공휴일 1회 1레인 1시간 기준(최대 2시간)

2) 개인별 연습이용료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요금기준	비고	
다목적 체육관	일일 입장	어른	2,000	1회 2시간 30분		
		어린이, 군인 청소년, 노인	1,000			
		단체(1인당)	1,500			
수영장	어른	월회원 (강습)	주4회	60,000	1회 2시간 30분	
			주3회	55,000		
			주2회	50,000		
		월회원(자유수영)		45,000		
		일일입장		3,500		
		군인, 청소년	월회원 (강습)	주4회		
	주3회			40,000		
	주2회			38,000		
	월회원(자유수영)		35,000			
	일일입장		2,500			
	어린이		월회원 (강습)	주4회		
		주3회		35,000		
		주2회		33,000		
		월회원(자유수영)		30,000		
		일일입장		2,000		
		노인	월회원 (강습)	주4회		
	주3회			27,500		
	주2회			25,000		
	월회원(자유수영)		22,500			
	일일입장		1,500			
	아쿠아 로빅		월회원 (강습)	주5회		
		주4회		40,000		
		주2회		28,000		
		일일입장	1회	3,500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요금기준	비고
체력단련실	어른	월회원	35,000	1회 2시간 30분	
		일일입장	2,500		
	군인, 청소년	월회원	25,000		
		일일입장	2,000		
	노인	월회원	17,500		
		일일입장	1,000		
다목적실	어른	월회원	40,000	1회 2시간 30분	
		일일입장	3,500		
	군인, 청소년	월회원	35,000		
		일일입장	3,000		
	어린이	월회원	25,000		
		일일입장	2,500		
	노인	월회원	20,000		
		일일입장	1,500		

타. 무실체육공원

1) 전용 사용료

구분	사용목적	사용료(원)	사용시간	비고
축구장 (인조잔디)	체육경기	20,000	2시간	
	체육활동	40,000		
다목적구장 (인조잔디)	무료			

파. 태장체육단지

1) 전용 사용료

구분	사용목적	사용료(원)	사용시간	비고
야구장 (1면)	체육경기	20,000	2시간	·제1~4야구장, 소프트볼장, 유소년야구장
	체육활동	40,000		
인라인스케이장	무료			
풋살장	무료			

하. 환경체육단지

1) 전용 사용료

구분	사용목적	사용료(원)	사용시간	비고
축구장 (인조잔디)	체육경기	20,000	2시간	
	체육활동	40,000		
풋살구장 (5면)	체육경기	50,000	2시간	
	체육활동	100,000		

2) 개인별 연습이용료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요금기준	비고
풋살구장 다목적구장	어른	면당	10,000	1회 1시간	
	어린이, 군인 청소년, 노인	면당	5,000		
족구장	어른	면당	5,000		
	어린이, 군인 청소년, 노인	면당	2,500		

거. 혁신도시체육시설

1) 전용 사용료

구분	사용목적	사용료(원)	사용시간	비고
양궁장	체육경기	15,000	4시간	
	체육활동	30,000		
테니스장 (3면)	체육경기	25,000	2시간	
	체육활동	50,000		

2) 개인별 연습이용료

구분	이용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요금기준	비고
테니스장	실외	코트당	어른	6,000	1회 1시간	
			어린이, 청소년, 노인	3,000		
		월회원	어른	75,000		
			어린이, 청소년, 노인	37,500		

너. 문막생활체육시설

1) 전용 사용료

구분	사용목적	사용료(원)	사용시간	비고
축구장 (인조잔디)	체육경기	20,000	2시간	
	체육활동	40,000		
농구장, 족구장		무료		

2) 개인별 연습이용료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요금기준	비고
다목적구장	어른	면당	10,000	1회 1시간	
	어린이, 군인 청소년, 노인	면당	5,000		

더. 원주배드민턴전용경기장

1) 전용 사용료

사용목적	사용료(원)	사용시간	비고
체육경기	30,000	4시간	
체육활동	50,000		

2) 개인별 연습이용료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요금기준	비고
배드민턴	어른	2,000	1회 2시간	
	어린이, 청소년, 노인	1,000		
	단체(1인당)	1,500		
탁구장	어른	2,000	1회 2시간	
	어린이, 청소년, 노인	1,000		
	단체(1인당)	1,500		

러. 원주남부 복합체육센터

1) 전용 사용료

구분	사용목적	사용료(원)	사용시간	비고
다목적체육관	체육경기	30,000	4시간	
	체육활동	50,000		
수영장 (레인대관)	체육활동	100,000	1시간	주말 및 공휴일 1회 1레인 1시간 기준(최대 2시간)

2) 개인별 연습이용료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요금기준	비고
사이클 파크	일일 입장	어른		3,000	1회 2시간
		군인, 청소년		2,200	
		어린이		1,800	
		노인		1,200	
수영장	어른	월회원 (강습)	주4회	60,000	
			주3회	55,000	
			주2회	50,000	
		월회원(자유수영)		45,000	
		일일입장		3,500	
	군인, 청소년	월회원 (강습)	주4회	45,000	
			주3회	40,000	
			주2회	38,000	
		월회원(자유수영)		35,000	
		일일입장		2,500	
	어린이	월회원 (강습)	주4회	40,000	
			주3회	35,000	
			주2회	33,000	
		월회원(자유수영)		30,000	
		일일입장		2,000	
	노인	월회원 (강습)	주4회	30,000	
			주3회	27,500	
			주2회	25,000	
		월회원(자유수영)		22,500	
		일일입장		1,500	
	아쿠아 로빅	월회원 (강습)	주5회	50,000	
			주4회	40,000	
			주2회	28,000	
		일일입장	1회	3,500	
체력단련실	어른	월회원		35,000	1회 2시간
		일일입장		2,500	
	군인, 청소년	월회원		25,000	
		일일입장		2,000	
	노인	월회원		17,500	
		일일입장		1,000	

머.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1) 전용 사용료

구분	사용목적	사용료(원)	사용시간	비고
다목적체육관	체육경기	30,000	4시간	
	체육활동	50,000		
공연장	공연, 행사	50,000	09:00~13:00	
		60,000	13:00~18:00	
		100,000	18:00~22:00	
스쿼시장 (5면)	체육경기	25,000	2시간	
	체육활동	50,000		
수영장 (레인대관)	체육활동	100,000	1시간	주말 및 공휴일 1회 1레인 1시간 기준(최대 2시간)

2) 개인별 연습이용료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요금기준	비고
다목적 체육관	일일 입장	어른	2,000	1회 2시간	
		어린이, 군인 청소년, 노인	1,000		
		단체(1인당)	1,500		
수영장	어른	월회원 (강습)	주4회	60,000	
			주3회	55,000	
			주2회	50,000	
		월회원(자유수영)		45,000	
		일일입장		3,500	
	군인, 청소년	월회원 (강습)	주4회	45,000	
			주3회	40,000	
			주2회	38,000	
		월회원(자유수영)		35,000	
		일일입장		2,500	
	어린이	월회원 (강습)	주4회	40,000	
			주3회	35,000	
			주2회	33,000	
		월회원(자유수영)		30,000	
		일일입장		2,000	
	노인	월회원 (강습)	주4회	30,000	
			주3회	27,500	
			주2회	25,000	
		월회원(자유수영)		22,500	
		일일입장		1,500	
	아쿠아 로빅	월회원 (강습)	주5회	50,000	
			주4회	40,000	
			주2회	28,000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요금기준	비고
		일일입장	1회	3,500	
체력단련실	어른	월회원	35,000	1회 2시간	
		일일입장	2,500		
	군인, 청소년	월회원	25,000		
		일일입장	2,000		
	노인	월회원	17,500		
		일일입장	1,000		
스쿼시장	어른	월회원	60,000	1회 1시간	·월회원: 주3회/2시간
		일일입장	3,000		
	군인, 청소년, 어린이	월회원	50,000		
		일일입장	2,500		
	노인	월회원	40,000		
		일일입장	2,000		

버. 농민문화체육센터

1) 전용 사용료

시설명	단위	사용료(원)	비고
다목적경기장	1일(09:00 ~ 22:00)	60,000	
	오전(09:00 ~ 12:00)	20,000	
	오후(13:00 ~ 17:00)	25,000	
	야간(18:00 ~ 22:00)	25,000	
소공연장	1일(09:00 ~ 22:00)	20,000	
	오전(09:00 ~ 12:00)	7,000	
	오후(13:00 ~ 17:00)	8,000	
	야간(18:00 ~ 22:00)	8,000	
주부교실	1일(09:00 ~ 22:00)	20,000	
	오전(09:00 ~ 12:00)	7,000	
	오후(13:00 ~ 17:00)	8,000	
	야간(18:00 ~ 22:00)	8,000	
수영장 (레인대관)	1시간	100,000	주말 및 공휴일 1회 1레인 1시간 기준 (최대 2시간)

2) 개인별 연습이용료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요금기준	비고
수영장	어른	월회원 (강습)	주4회	60,000	1회 2시간	
			주3회	55,000		
			주2회	50,000		
		월회원(자유수영)		45,000		
		일일입장		3,500		
	군인, 청소년	월회원 (강습)	주4회	45,000		
			주3회	40,000		
			주2회	38,000		
		월회원(자유수영)		35,000		
		일일입장		2,500		
	어린이	월회원 (강습)	주4회	40,000		
			주3회	35,000		
			주2회	33,000		
		월회원(자유수영)		30,000		
		일일입장		2,000		
	노인	월회원 (강습)	주4회	30,000		
			주3회	27,500		
			주2회	25,000		
		월회원(자유수영)		22,500		
		일일입장		1,500		
	아쿠아 로빅	월회원 (강습)	주5회	50,000		
			주4회	40,000		
			주2회	28,000		
		일일입장	1회	3,500		
체력단련실	어른	월 이용시		20,000	1회 2시간	
		1회 이용시		2,500		
	군인, 청소년	월 이용시		15,000		
		1회 이용시		2,000		
	노인	월 이용시		10,000		
		1회 이용시		1,500		

서. 원주서부 복합체육센터

1) 전용 사용료

구분	사용목적	사용료(원)	사용시간	비고
다목적체육관	체육경기	30,000	4시간	
	체육활동	50,000		
GX룸	1일(09:00 ~ 22:00)	20,000		
	오전(09:00 ~ 12:00)	7,000		
	오후(13:00 ~ 17:00)	8,000		
	야간(18:00 ~ 22:00)	8,000		
수영장 (레인대관)	체육활동	100,000	1시간	주말 및 공휴일 1회 1레인 1시간 기준(최대 2시간)

2) 개인별 연습이용료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요금기준	비고
수영장	어른	월회원 (강습)	주4회	60,000	1회 2시간	
			주3회	55,000		
			주2회	50,000		
		월회원(자유수영)		45,000		
		일일입장		3,500		
	군인, 청소년	월회원 (강습)	주4회	45,000		
			주3회	40,000		
			주2회	38,000		
		월회원(자유수영)		35,000		
		일일입장		2,500		
	어린이	월회원 (강습)	주4회	40,000		
			주3회	35,000		
			주2회	33,000		
		월회원(자유수영)		30,000		
		일일입장		2,000		
	노인	월회원 (강습)	주4회	30,000		
			주3회	27,500		
			주2회	25,000		
		월회원(자유수영)		22,500		
		일일입장		1,500		
	아쿠아 로빅	월회원 (강습)	주5회	50,000		
			주4회	40,000		
			주2회	28,000		
		일일입장	1회	3,500		
체력단련실	어른	월 이용시		35,000	1회 2시간	
		1회 이용시		2,500		
	군인, 청소년	월 이용시		25,000		
		1회 이용시		2,000		
	노인	월 이용시		17,500		

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요금기준	비고
	1회 이용시	1,000		

어. 백운테니스장

1) 전용 사용료

구분	사용목적	사용료(원)	사용시간	비고
테니스장 (8면)	체육경기	48,000	2시간	
	체육활동	96,000		

2) 개인별 연습이용료

구분	이용구분	이용구분	이용료(원)	요금기준	비고
테니스장	실외	코트당	어른	6,000	1회 1시간
			어린이, 청소년, 노인	3,000	
		월회원	어른	75,000	
			어린이, 청소년, 노인	37,500	

3. 부대시설 사용료

품목별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 고
전기요금	1시간		시간당기본요금 + (시간당사용요금×사용시간)	시간당기본요금산출방법 ·월별기본요금(한전제공) ×1/30×1/8(근무시간)
마이크 음향시설	1회 1회		7,000 45,000	·1회는 4시간을 말한다. ·후로링카바 및 고무매트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부 담이며 1일 초과하는 매 1회에 대하여는 기본액 의 50%정수 ·체육경기 및 프로경기시 각실 사용은 무료
냉·난방	냉방 난방	1시간 1시간	시간당 연료시가를 사용료로 한다.	
스코어판	1회	1개	5,000	
전광판	풀컬러	1회	기본료(15,000원)+ (시간당사용요금×사용시간)	
	3컬러		기본료(10,000원)+ (시간당사용요금×사용시간)	
	이동식		기본료(5,000원)+ (시간당사용요금×사용시간)	
농구대	1회	1조	15,000	
배구지주	1회	1조	7,000	
배드민턴지주			7,000	
족구지주			7,000	
핸드볼골대			7,000	
후리링카바 고무매트	1회	1식	20,000 20,000	
각 실 사용	1회	m²당	500	

체육시설 사용료, 이용료 및 부대시설 감면 기준(제17조 관련)

1. 사용료 감면

구 분	대 상
사용료의 면제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구성된 체육동호회 또는 단체가 체육활동으로 사용할 때(원주드림체육관에 한함)
	3. 농업인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농민문화체육센터에 한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의 80퍼센트 감경	1. 시체육회 및 시장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2.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할 때
사용료의 50퍼센트 감경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시 소재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 소재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 소재 유치원에서 행사로 사용 할 때
	3. 종목별협회·연맹이 사용할 때
	4. 시체육회 및 시장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사용할 때
	5.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이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할 때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구성된 체육동호회 또는 단체가 사용할 때
	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단체가 사용할 때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9. 노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11. 노인으로 구성된 체육동호회 또는 단체가 사용할 때
	12.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스포츠 꿈나무 육성 및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유소년 활동
	13.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이 사용할 때

2. 이용료 감면

구 분	대 상
이용료의 면제	1.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강원특별자치도 단위 이상의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시체육회, 시장장애인체육회가 인정하는 선수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원주드림체육관에 한함)
이용료의 80퍼센트 감경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원주드림체육관에 한함)
이용료의 50퍼센트 감경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기업의 종사자 14.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15.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부모와 자녀 모두 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16.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대표로 출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선수(입상일부터 3년) 1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농민문화체육센터에 한한다) 18.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

3. 부대시설 사용료의 감면

- 가. 부대시설 사용료의 감면은 제1호 사용료의 감면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 나. 부대시설 사용료의 감면 신청 및 승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 부대시설 사용료의 감면 신청 내용과 달리 초과 및 무단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된 부대시설 사용료를 환수하고, 초과 및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감면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 라. “다”와 같이 부대시설 초과 및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환수 및 추가 부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납부 시 까지 다른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허가) ① ~ ⑤ (생략) <u><신 설></u> <u><신 설></u>	제4조(사용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시장은 체육시설의 원활한 사용 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예약시스템의 운영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 <u>⑦ 시장은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약 현황을 제6항에 따른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u>
제6조(사용허가 제한 등)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6조(사용허가 제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 상대방의 명칭(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을 제외한 처분 내용에 한정한다), 취소 사유 및 취소 일자를 처분일부터 30일간 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u>

제23조(운영·관리의 위탁·대행)

①·② (생략)

<신설>

③ (생략)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3조 관련)

농민문화체육센터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21
----------	----------------

[별표 1의2]

체육시설의 사용·이용시간 및

휴관일(제9조 관련)

1. ~ 2. (생략)

3. 휴관일

가. 매주 월요일(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원주남부 복합체육센터 제외), 매주 금요일(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원주남부 복합체육센터),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5월 1일(근로자의 날)

나.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하지 아니하다.

제23조(운영·관리의 위탁·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수탁자는 해지 효력 발생일부터 1년간 이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의 위탁·대행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3조 관련)

농민문화체육센터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21
원주서부 복합체육센터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 200

[별표 1의2]

체육시설의 사용·이용시간 및

휴관일(제9조 관련)

1. ~ 2. (현행과 같음)

3. 휴관일

가. 매주 월요일(제외시설: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원주남부 복합체육센터, 원주서부 복합체육센터), 매주 금요일(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원주남부 복합체육센터, 원주서부 복합체육센터),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5월 1일(근로자의 날)

나. 국경일 중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

한글날

[별표 6]

체육시설 사용료, 이용료 및
부대시설 감면 기준
(제17조 관련)

2. 이용료 감면

이용 료의 50 퍼센 터 감경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u>7. ~ 16.</u> (생 략)

천절 및 한글날

[별표 6]

체육시설 사용료, 이용료 및
부대시설 감면 기준
(제17조 관련)

2. 이용료 감면

이용 료의 50 퍼센 터 감경	1. ~ 6. (현행과 같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u>9. ~ 18</u>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2(사용료·이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와 사용기준)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체육시설의 사용·이용 인원을 특정할 수 없어 산정에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원주시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연락처	(033) 737-4960